



## Korean Tax Newsletter

2026년 1월

## CONTENTS

### 세법개정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세무동향

-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 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예규판례

#### ○ 법원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 조세심판원

-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재정경제부

-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 ○ 행정안전부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 판단 기준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사업장(지점)의 실제 업종인지 여부
-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국세청

-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및 한도 계산 방법

- 임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종업원 할인금액(근로 소득)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 방법
-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해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부가가치 세법상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법개정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6.1.19~2.5),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1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대도약 지원

[보도자료\(Link\)](#)

##### ■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 R&D 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

###### 〈개정안〉 세부기술 대상 확대(11개 신설, 2개 확대)

| 분야 | 세부기술   |  |
|----|--------|--|
| 신설 | 첨단 소부장 | 바이오·헬스   |
|    |        | 에너지·환경   |
|    |        | 융복합 소재   |
|    | 탄소중립   | 고용점 금속 기반 4N 금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
|    |        | 고규소 함량 저철순 전기강판 제조기술                           |
|    |        |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 기술      |
|    |        |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                            |
| 확대 | 탄소중립   | MLCC 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
|    |        |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당기술                            |
|    |        |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                            |
|    |        |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
| 확대 | 탄소중립   |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                            |
|    |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br>⇒ 작동 온도범위 확대            |
|    |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br>⇒ 작동 온도범위 확대 |

######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 ○ R&D 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의 2)

###### 〈개정안〉 세부기술 대상 확대(3개 신설, 2개 확대)

| 분야 | 세부기술     |  |
|----|----------|--|
| 신설 | 반도체      |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
|    |          | 환경친화적 점단 선박의 운송·주진 기술(LNG 화물장 등)           |
|    | 미래형 운송이동 |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
| 확대 | 반도체      |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br>⇒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
|    | 수소       |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br>⇒ 청로수소 기술 포함               |

######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 §9③·§9⑦·별표 6)

###### 〈개정안〉 클라우드 이용료 적용범위 명확화 및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포함

- 클라우드 이용료(연구개발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조특령 §21④)  
〈개정안〉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구체화(조특령 §26 의 8④)  
(\*)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  
〈개정안〉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중견) 5 명, (대기업) 10 명  
〈개정이유〉 중견·대기업 고용 증대 유인 제고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구체화(조특령 §35 의 6 신설)  
〈개정안〉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신설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방법 규정
    - 과세이연 종료(전액 익금산입) 요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자회사의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19 의 2)  
〈개정안〉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자원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사업 지원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조특령 §104 의 24① 신설)  
(\*)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적용  
〈개정안〉 배당소득의 범위: 현금배당(주식배당 등 제외)
    - 담보, ETF 설정, 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대차거래(개인주주가 증권사에 대여하는 주식)에 따른 배당액 포함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조특령 §104 의 24② 신설)  
〈개정안〉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법인
    -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등 산정방법(조특령 §104 의 24④·⑤ 신설)  
〈개정안〉 배당성향 산정방법
    - (원칙) 연결재무재표 기준 배당성향(현금배당총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의 경우)  
원칙: 배당성향 25%로 간주(전년 대비 배당 10% 증가 필요)  
예외: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인 경우 배당성향 0%로 간주
    - (기준연도 적용요건의 예외) '24.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필요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인 배당액 범위 구체화**(조특령 §100 의 32⑧ 신설)

**〈개정안〉**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액 범위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조특령 §100 의 32⑤)

**〈개정안〉** 기업소득 비율 상향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의 70% ⇒ 80%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의 15% ⇒ 30%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의무적립금 환입액 추가**(조특령 §100 의 32④)

**〈개정안〉** 기업소득 산정시 가산항목 추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27년부터 적용)
-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 지역성장 지원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요건 규정**(조특령 §99 의 8)

**〈개정안〉** 감면요건 규정

- 5 억원 이상 투자 + 상시근로자 10 명 이상 고용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 지원제도 합리화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조특령 §11 의 2)

**〈개정안〉**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조특령 §60 의 2⑬)

**〈개정안〉** 감면액 추징 요건 강화

- 본사업무 총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 내 본사업무 종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40%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 의 21)

**〈개정안〉**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추가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조특령 §104 의 21⑥)

**〈개정안〉**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 축소완료 전에도 실제 축소량에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산업부 장관 인정·확인) ÷ 국내매출액]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의 9 신설)

- 〈개정안〉**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세부내용

- (납부이연 및 과세이연 방법)  
    <개인> 다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 납부이연  
    <법인> 양도차익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이연세액 납부방법)  
    <일부 납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주식처분비율만큼 납부(익금 산입)  
    <전부 납부> 주식 처분비율 합계가 50% 이상 또는 전부 처분, 리츠의 해산인 경우 등 전부 납부
-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이연 또는 과세이연된 세액 × 일수(과세이연 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22/100,000

-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소득령 §17)

- 〈개정안〉** 비과세 대상 확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 26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 3,7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법인령 §39①)

- 〈개정안〉**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추가

-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보호시설

-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령 §3①)

- 〈개정안〉**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공익활동 지원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및 가속상각 범위 구체화**(조특령 §25의 5 신설)

- 〈개정안〉** 스마트공장 가속상각 대상자산 및 가속상각 범위

- (대상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구축물 및 무형자산 (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은 제외]
- (가속상각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범위 구체화**(조특령 §7 의 2①·③·④·⑤)  
〈개정안〉 협력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직전 3 개 과세연도 매출액이 평균 3 천억원 미만인 기업)의 범위 추가
  - 수탁기업(제조, 공사,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견기업)
  -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 그 밖에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가**(조특령 §100 의 32⑮)  
〈개정안〉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확대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 한정)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 납세자 권리보장 및 편의 제고**

-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법인령 §38⑨·⑩·§39⑥·⑦)  
〈개정안〉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 폐지
- **〈개정이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조특령 §104 의 5)  
〈개정안〉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 (소득세) 2 만원 ⇒ 1 만원(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 천원 중 적은 금액)
  - (법인세) 2 만원 ⇒ 1 만원
  - (부가가치세) 1 만원 ⇒ 5 천원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 만원 유지
-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수준 합리화**
-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교육세령 §4②)  
〈개정안〉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
  -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수수료
  -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결제 대금을 감액청구시 해당 할인액
-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법인령 §129 의 3④ 신설)  
〈개정안〉 과소자본 지급이자 없는 경우 간주자본세제 적용 배제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 배 이하인 경우 간주자본세제 미적용
- **〈개정이유〉 간주자본세제 적용 합리화**
-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조특령 §17①·§26 의 4②)  
〈개정안〉 총급여액 기준 조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7 천만원 초과 ⇒ 8 천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 천만원 이상 ⇒ 8 천만원 이상
- 〈개정이유〉** 공제제도 적용 대상 합리화

○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법인령 §77)

**〈개정안〉** 평가방법 변경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개정이유〉**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구체화**(법인령 별표 2)

**〈개정안〉**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추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거짓제출 시정명령 위반: 500 만원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 세무동향

###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정부는 1.9.(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 종 패키지 추진’ 등의 세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Link) |
|---|--------------------|
| ○ <u>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u>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되, 지원대상·방식 등은 효과성·형평성·재정여건 및 체리피킹 방지 방안 등 검토해 발표('26.7월)</li><li>- [지원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국) 이차전지, 태양광셀, 풍력블레이드 등</li><li>(일본) 전기차,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li></ul></li></ul>  |                    |
| ○ <u>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中企졸업시 일정기간 기준 세제지원 받을 수 있는 점감구간 신설 검토하고, 中企지원체계의 성장촉진형 개편방안 마련('26.下)</li><li>- (현행) R&amp;D·투자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존재 ⇒ (개선) 그 외 세제지원에도 점감구간 신설 검토</li><li>- 연구용역('26.上)을 통해 中企 성장유형별(예: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지원방안 마련</li></ul>  |                    |
| ○ <u>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 종 패키지 추진</u>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적용대상) 해당 기업 노동자 외 도급, 특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포함</li><li>(적용시설) 법령상 의무시설 외 AI 등 신기술 활용 안전시설(예: AI 관제시스템, 안전감지용 드론) 포함</li></ul></li><li>-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li><li>- 中企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 도입(기준내용연수 50% 단축)</li></ul> |                    |

## 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은 1.26.(월)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1.2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국세청 보도자료(Link) |
|--|------------------|
|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고안내 강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지속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은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별도 안내</li><li>(대리인 보수 상향)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 민간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임료 한도 대폭 상향</li></ul>  |                  |
| ○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영세 소상공인 지원) 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영세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시행</li><li>(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li><li>(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하고, 해당 시기에 조사 착수하도록 개선</li><li>(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도입) 세무조사 중에 반복 적출되는 신고오류 등 주요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에도 안내</li></ul> |                  |
| ○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 국세청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하고,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li><li>(조사규모 탄력운영)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li></ul>   |                  |
| ○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I 국세행정 구현)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흠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선개발하여 AI 기반 납세서비스 완성도 제고</li><li>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li><li>국가재정수입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li></ul>  |                  |

## 예규판례

### [법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 두 38295 판결, 상고기각)

#### ■ 쟁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 238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 조항」) 조항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의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 1684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18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 방법

#### ■ 사안

원고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A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B 회사 및 C 회사의 각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C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 3 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음. 피고는 C 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C 회사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의 「제 3 의 외국법인」에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판결요지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재적용과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35 조 제 2 항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18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에서 위임한 요건 중 하나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 2 호)을 들고 있음. 그러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 조항」)에서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 2 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 3 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 3 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를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에 따른 특수관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후문 조항은 그 법 문언 자체에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재적용 요건으로,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 2 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치환되어야 할 부분을 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각 호의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특정외국법인의 관점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후문 조항의 문언을 넘어서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후문 조항에 따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의 「내국법인」 부분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더라도, 「제 3 의 외국법인」을 반드시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그 외의 국가에 소재한 법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의 「제 3 의 외국법인」이란 기본적으로 그 법문 중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과 구별되는 「다른 외국법인」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임.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 1 조 제 3 호에서도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도 ‘외국법인’이라 는 용어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법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임. 이 사건 후문 조항이 ‘외국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 등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문언이나 문맥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움. 유독 이 사건 후문 조항을 매개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만,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이 ‘제 3 의 외국법인’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 그러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18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일지라도 해당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 3 의 외국법인’에 해당함

## **[조세심판원] 제 3 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 서 2729, 2025.12.3., 취소)

### ■ 쟁점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매각과정에서 회수를 포기한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안

청구법인은 2016.1.1. 자매회사인 (주)C 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동 법인이 중국에 설립한 D(이하 “쟁점자회사”)의 지분도 승계되어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의 100% 종속회사가 되었음. 한편, 청구법인은 (주)C 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합병 당시 보유하던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승계하였고, 이후 쟁점자회사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이하 “쟁점대여금”)를 보유하게 되었음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지원에도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영업정상화가 어렵다고 보아 E 유한회사(이하 “쟁점매수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지분 처분 절차를 완료하였음

청구법인은 지분양수도계약에 수반된 채무면제 합의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장부에서 제각한 후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동 제각이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쟁점대여금은 쟁점자회사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쟁점대여금을 포기한 것은 사업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전당분 사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자회사를 승계하여 상호 영업상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등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100% 주주로서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업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양 법인은 일반적인 모자회사관계보다 더욱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자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자회사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자회사의 차입금 현황 및 보통예금 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자회사는 쟁점대여금 대부분을 실제로 원재료 매입 및 직원급여 지급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 지원에도 쟁점자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가 향후 사업을 계속하여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자회사 향후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그 방안으로서 쟁점자회사의 청산, 중국 내 다른 사업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및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분 매각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선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쟁점매수자에게 쟁점자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하면서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없이 본인 몫의 이익을 포기하고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로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포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그 포기 행위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정경제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6.1.6.)

### **■ 질의**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 <1 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 <2 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

### **■ 사실관계**

- A 기업은 '06년~'1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 (이탈) '20.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요건됨에 따라 '20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 (복귀)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2~'23 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 (재이탈) '24 사업연도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중기령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초과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 **[행정안전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 판단 기준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사업장(지점)의 실제 업종인지 여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2, 2025.11.4.)

### ■ 질의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 단서에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을 규정하여 해당 업종은 중과세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과세 배제를 법인의 주업종(제조업)과 사업장(지점)의 업종(유통산업)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법」(2025.1.1. 법률 제 20630 호로 개정된 것) 제 13 조 제 2 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 11 조제 1 항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 분의 200 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 11 조에 따른 해당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이하 “쟁점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2025.5.27. 대통령령 제 35544 호로 개정된 것) 제 26 조에 중과 제외 업종들을 규정, 그중 제 6 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규정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지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제외 업종을 법인의 주업종인 제조업과 사업장(지점) 업종인 유통사업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대법원 2024.5.28. 선고 2003 두 7392 판결 등 참조)인데, 쟁점규정의 문언 상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 그 실제사용 관계, 고유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93 누 15113, 1993.11.23. 판결 참조)

이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당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법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 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해당 임대매장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부동산세 제과-427, 2020.2.26. 참조)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 규정, 관련 판례 및 종전 해석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에 대한 중과세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주업종과 관계없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 11 조에 따른 해당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행정안전부]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8 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59, 2025.11.19.)

**■ 질의**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8 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산업용 건축물이 본점으로 이용될 때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 조 제 4 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 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3 호에서는 「산업입지법」 제 2 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우선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사업용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면, 「산업입지법」에서는 ‘지식산업’의 세부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제 2 조 제 8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의 4 를 따를 경우, 「산업발전법」 제 5 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지식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 5 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 에 따를 경우 첨단기술의 하나로 이동통신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지방세 특례제도과-2634, 2020. 11. 5.)되므로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음으로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본점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 조 제 4 항의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 감독하면서 기획, 인사, 총무 등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 8. 20.) 할 것이며, 본점이라 함은 법인 전체 경영을 총괄하면서 법인의 기획, 경영, 영업, 인사, 총무, 재무 등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사실상 본점을 말하고(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8.20.),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서비스업 등 유무선통신사업을 수행하는 ICT 사업부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 **[국세청]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및 한도 계산 방법**

(서면-2025-법규소득-1763, 2025.11.6.)

### ■ 질의

사용인이 수령하는 퇴직금에 임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및 한도 계산 방법

### ■ 사실관계

- 법인의 임원 같은 임원 퇴임 이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나, 임원 퇴임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함
- 해당 법인은 사용인으로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임원 근무기간과 사용인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고자 함

#### 회신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고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으로 최종 퇴사하면서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체 퇴직금 중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22 조 제 3 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계산식의 “퇴직한 날”은 “임원이 퇴임한 날”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퇴임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산정하는 것임

## **[국세청] 임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종업원 할인금액(근로소득)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 방법**

(사전-2025-법규소득-0815, 2025.12.10.)

### ■ 질의

임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종업원 할인금액(근로소득)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 방법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영 온라인 쇼핑몰 및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사 패션 상품(일부 제외)을 할인 판매(정상 소비자 판매가격의 40%~50%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포인트제도 운영 중
- 시즌오프 세일 등 구매 시점별로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같거나 낮게 형성되어 있음

#### 회신

임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기간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해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전-2025-법규부가-0942, 2025.12.16.)

### ■ 질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제조업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판매업자인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지점(신청법인)이 해당 재화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지점”)은 aaa 그룹 내 aaa 브랜드 화장품과 bbb 브랜드 건강기능식 품 등의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cc 국 법인 ddd(이하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으로서 외국본점의 국내 제품 구매 및 판매거래 관련 사업지원용역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25년 설립되었음
- 외국본점은 국내 제조업자인 제 3 자 갑법인(이하 “갑법인”)과 제품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갑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관계회사인 aaa 코리아(이하 “을법인”)과의 판매계약에 따라 해당제품을 을법인에 판매할 예정이며 외국본점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하고 을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은 갑법인의 보관 창고에서 직접 을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될 예정임
- 외국본점은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즉시 을법인에게 판매할 것인바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갑법인에서 외국본점으로 외국본점에서 을법인으로 지체 없이 이전될 예정임
- 외국본점이 갑법인 및 을법인과 직접 체결한 제품 제조·구매 계약 및 판매계약에 따른 국내제품 매매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지점인 신청법인은 외국본점과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본점의 제품구매 및 판매관련 행정적·실무적 지원업무(이하 “지원용역”)를 수행할 예정인바, 외국본점을 위하여 외국본점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신청법인이 수행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갑법인 관리지원: 외국본점의 갑법인 관리 및 소통지원, 외국본점의 지시에 따라 외국본점과 갑법인간 구매관련 소통 및 체계적 업무절차의 실무적 지원

(\*) 주문 관리지원: 외국본점과 을법인간 수요예측 및 주문 등 관련 소통지원, 외국본점의 지시에 따른 구매주문서 작성 등 관련 행정적 지원

(\*) 물류 관리지원: 외국본점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제품재고의 배송, 입고, 반품 등 재고 물류흐름관리 지원 및 보고업무 지원, 물류업체, 갑법인, 을법인과 제품 배송수량 및 배송일정 관리 등 협업 및 지원

(\*) 품질검수 지원: 외국본점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을법인에 판매하는 제품 관련 외국본점의 기준에 따른 제품의 품질검수지원 및 관련 보고업무 지원

(\*) 재무지원 기타 관리지원: 외국본점의 지시에 따라 제품구매 및 판매관련 청구서 등 거래문서 검토, 국내지점의 회계, 재무, 급여 및 인사운영 프로세스 관리지원, 기타 국내 사업운영 관련 일상적·행정적 업무지원

- 신청법인은 외국본점에 대한 지원용역 제공시 발생된 직·간접 비용에 적정 마진을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외국본점은 신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외화(미화)로 직접 지급하며, 동 용역대가는 기업 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신청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용역매출액으로 계상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외국본점에 대한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출·매입 부가가치세액의 차액을 외국본점으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 회신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갑법인 관리지원, 주문 관리지원, 물류 관리지원 및 품질검수 지원, 재무지원 및 기타 관리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국내지점이 외국본점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본점에게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 22 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취하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 조제 2 항제 1 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4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국세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4596, 2026.1.7.)

### ■ 질의

용역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골프 시뮬레이터(GS) 판매 및 골프존 라이브 서비스(골프 코스 데이터와 이용자의 경기 결과를 분석한 사용자별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골프 시뮬레이터를 통해 구현, 이하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 및 유지보수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가맹사업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제품을 설치해주고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함
- 비가맹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이용약관에 따라 라이브 서비스 전용 선불포인트를 선충전하여 고객이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 선불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신청법인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비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에 따라 비가맹사업자에게 선불포인트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 포인트(추후 라이브 서비스 이용료 지급 시 선불포인트보다 우선 차감되고, 제3자에게 양도 및 환불 불가함)로 무상지급함

### 회신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이하 “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1 조 제 2 항 제 9 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mailto:jekwon@deloitte.com)

###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mailto:kyungjokim@deloitte.com)

###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mailto: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